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2조에 의거 제2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3월 18일(목) 오전 11시

2.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62 대구테크노파크벤처공장 8층 은하수관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사항

제1호 의안 : 제20기(2020.1.1~2020.12.31)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 사내이사 정수홍 선임의 건

제3-2호 : 사내이사 정성훈 선임의 건

제3-3호 : 사외이사 양근식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4. 배당내역 : 1주당 예정배당금 80원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7.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2019년 2월 12일 이사회에서 계속 시행함을 결의하였기에,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1년 3월 8일 오전9시 ~ 2021년 3월 17일 오후5시

- 행사기간 중 24시간 투표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주총참석장

- 대리행사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 주총참석장

※ 문의처 : 재경팀 TEL (053)589-1692

9.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 당사는 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회사 홈페이지(www.snstech.co.kr)에 게재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금번 주주총회 시 기념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안내사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비대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제도의 활용을 권장 드립니다. 주주총회 개최 시에는 총회장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또는 '디지털 체온계' 등으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부득이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사유로 출입이 제한될 경우에 대비하여 당사는 위임장을 비치하여 해당 주주께서 위임장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결권 행사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병 예방을 위해 총회장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립니다.

※ 비상사태 시 총회장 변경에 관한 안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총회장 폐쇄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장소변경 등에 따른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재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2021 년 2 월 26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로 42 (호림동)

주식회사 에스앤에스텍

대표이사 정 수 홍 (직인생략)

사내이사 선임 후보자에 관한 사항

성명 / 생년월일	정 수 홍 (1955년 7월 18일)
선 임 구 분	사내이사 (재선임)
주 요 약 력	전) (주) 피케이엘 대표이사 현) (주) 에스앤에스텍 회장
추 천 인	이 사 회
최대주주와의 관계	본인
회사와의 최근 3년 거래내역	해당사항없음
체납처분 사실 여부	해당사항없음
임원으로 재직하 기업의 회생*파산절차 진행 사실 여부	해당사항없음
취업제한 사유 등 결격 사유 유무	해당사항없음

사내이사 선임 후보자에 관한 사항

성명 / 생년월일	정 성 훈 (1988년 10월 26일)
선 임 구 분	사내이사 (신규선임)
주 요 약 력	전) 코메스인베스트먼트(주) 투자심사역 전) 삼성전자(주) 상생협력아카데미 프로 현) (주)에스앤에스텍 전략기획
추 천 인	이 사 회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대주주의 자
회사와의 최근 3년 거래내역	해당사항없음
체납처분 사실 여부	해당사항없음
임원으로 재직하 기업의 회생*파산절차 진행 사실 여부	해당사항없음
취업제한 사유 등 결격 사유 유무	해당사항없음

사외이사 선임 후보자에 관한 사항

성명 / 생년월일	양 근 식 (1955년 8월 1일)
선 임 구 분	사외이사 (재선임)
주 요 약 력	전) 한국중등교장협의회 부회장 전) 달서고등학교 교장 현) (주) 에스앤에스텍 사외이사
추 천 인	이 사 회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없음
회사와의 최근 3년 거래내역	해당사항없음
체납처분 사실 여부	해당사항없음
임원으로 재직하 기업의 회생*파산절차 진행 사실 여부	해당사항없음
취업제한 사유 등 결격 사유 유무	해당사항없음

정관 변경(안)

현 행	변 경	비 고
제8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u>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u>	비상장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신주의 동등배당) 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2.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3.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

<u>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u> <u>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u>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1-4. (생략) <u>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1-4. (현행과 같음) <u>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제22조(소집시기) <u>1. 당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u> <u>2.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소집한다.</u>	제22조(소집시기) <u>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u> <삭제>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
제47조(감사의 선임) 1. 감사는 <u>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u> 2. <u>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u> 3. <u>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u>	제47조(감사의 선임 · 해임) 1. 감사는 <u>주주총회에서 선임 · 해임한다.</u> 2. <u>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u> 3. <u>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u>	상법 개정안에 따라 감사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

<u>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u> <신설> <신설>	<u>4.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u> <u>5.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	감사 선임 또는 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1. (생략) 2. 대표이사(사장)는 <u>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u>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u>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 까지</u>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8. (생략)	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1. (현행과 같음) 2. 대표이사(사장)는 <u>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u>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u>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u>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8. (현행과 같음)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
제56조(이익배당) 1-2. (생략) 3.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u>현재의</u>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생략)	제56조(이익배당) 1-2. (현행과 같음) 3. 제1항의 배당은 <u>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u>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현행과 같음)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날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이종림	등기임원	사업부총괄	보통주	10,000
허진구	등기임원	재무 및 공시책임자	보통주	6,000
신철외 6인	미등기임원	연구소장외	보통주	37,000
총 (9명)	-	-		총(53,000)주

※ 등기임원을 제외한 부여대상자는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았으므로, 부여대상자명을 통합 기재하였습니다.

○ 부여방법 : 자기주식(차액보상형)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53,000주

○ 행사가격 : 주주총회 승인일 전일을 기준으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실질가액을 산정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이상으로 하여 결정)

○ 행사기간 :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후 2년 이내 행사

○ 기타조건의 개요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과 병합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등에 따름.